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7. 2. 24.

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: 성동구청장

나. 제출일자: 2017. 2. 14.

다. 회부일자: 2017. 2. 17.(의안번호: 1078)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이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제정(2016. 8. 12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(안 제1조 외 다수)

나.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

-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 설치 및 보수 우선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강화(안 제13조)

다.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

- 1)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던 것을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(안 제17조제2항)
- 2)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 
(안 제17조제4항)

3)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수락여부를 통지하는 기한 연장(안 제24조제1항)

- 조정안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→ 30일 이내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6. 12. 15. ~ 2017. 1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성별고려 의견 반영

5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,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안 제13조에서는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,

- 안 제17조 제2항 및 제4항, 안 제24조 제1항은 상위법인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한 것임.

○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,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맞춰 정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됨.